

「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2023. . .

제출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제26조의2제1항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지원에 따른 비용 추계가 불명확하므로 지원 범위를 예산의 범위 내로 지원 할 수 있게 수정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- 제26조의2제1항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지원 규정 수정
 - 당 초 :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1회에 한하여 50%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 - 변 경 :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1회에 한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「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수정안

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의2제1항 중 “50%”를 “예산”으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26조(산업단지 임대료 지원) 시장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조성한 산업단지 내 임대용지에 최초 입주하는 기업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. <u><신 설></u>	제26조(산업단지 임대료 지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5년간 임대료-----.	제26조(산업단지 임대료 지원) ① (개정안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② 시장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하여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른 임대료 지원 기간을 초과하여 최대 50년간 지원할 수 있다.	② (개정안과 같음)
<u><신 설></u>	제26조의2(부담금 지원) ① 시장은 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시행	제26조의2(부담금 지원) ① 시장은 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시행

	<u>령」에 따라 소재부 품장비 전문기업으 로 인증받은 기업이 관내에 신설 또는 증설 투자하는 경우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해 발생하는 하수 도 원인자부담금을 1회에 한하여 50%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세 부사항은 시행규칙 으로 정한다.</u>	<u>령」에 따라 소재부 품장비 전문기업으 로 인증받은 기업이 관내에 신설 또는 증설 투자하는 경우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해 발생하는 하수 도 원인자부담금을 1회에 한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u> <u>② (개정안과 같음)</u>
<u>제5장 투자유치 진흥기금</u>	<u><삭 제></u>	<u><삭 제> (개정안 과 같음)</u>
<u>제27조(투자유치진흥 기금의 출연) 시장 은 투자유치진흥기 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회계연도마 다 세출예산에 계상 하여 경상북도투자 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가 부담하여 야 할 출연금은 도 지사와의 협의에 따</u>	<u><삭 제></u>	<u><삭 제> (개정안과 같음)</u>

른다.

제28조(기금의 사용)

시장은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하고 자 하는 때에는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1. 분양 및 임대용

토지의 매입

2. 지방자치단체 및

산업단지개발사업

의 시행자 등이

소유하는 토지 등

의 임대료 감면

또는 분양가 인하

시 정상 가액과의

차액

3. 투자유치에 필요

한 각종보조금의

지급

4. 시의 투자유치활

동과 관련된 경비

5. 그 밖에 시장이

투자유치를 위하

여 필요하다고 인

<삭 제>

<삭 제> (개정안과
같음)

정하는 사업

<신 설>

제29조의2(인구증가
기여에 따른 추가
지원) ① 시장은 지
역경제 활성화와 고
용창출을 통해 구미
시 인구증가에 기여
한 기업에 대해 제2
3조, 제24조, 제25
조의2, 제29조에 따
른 지원 외 추가 보
조금을 지원할 수
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추
가 지원은 관내 전
입 근로자 증가 비
율에 따라 별표와
같이 정하며, 기업
당 설비투자금액의
5퍼센트 내 최대 1
억 원까지 지원할
수 있다.

제29조의2(인구증가
기여에 따른 추가
지원) ① (개정안과
같음)

② (개정안과 같음)